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10 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송기헌・박정하・백혜련

주철현 · 강훈식 · 김태년

위성곤ㆍ허 영ㆍ박 정

정성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, 이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, 시행령에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준용하도록 하고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,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

에 상향 규정하고,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 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(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후단 중 "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"를 "대통령령으로" 로, "감면(減免)하며"를 "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75 세"를 "65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④ (생	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	5
족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
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	
서 진료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	
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	
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	
우 <u>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</u>	- <u>대통령령으로</u>
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감면(減</u>	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
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	<u>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</u>
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	위에서 감액하며
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	
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.	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<u>75세</u>	⑥ <u>65세</u>
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	
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	
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
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	
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	
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	

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	
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	
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	
한다.	
⑦・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